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Arnstein's ladder reimagined(<https://www.alexandrinepress.co.uk/having-a-say>)

Arnstein의 주민참여 사다리 : 진정한 주민참여란 무엇인가?

| 강세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 wisdomcity@saesayon.org)

Arnstein은 1960년대에 미국 보건교육복지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HEW) 차관의 특별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저소득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 미국 주택도시개발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의 주민참여 수석자문관으로 일하면서 존슨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도시만들기(Model Cities Program)¹ 등 공동체 단위의 정책사업이 주민주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공정책에 대한 주민의 참여가 어떻게 왜곡되고 봉쇄되는지 생생하게 목격하였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진정한 주민참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한 것이 1969년 미국 계획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JAPA)에 실린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이다. 직역하면 '주민참여의 사다리'이니 제목만 보면 주민참여에 여러 단계가 있고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글이라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주민참여가 어떻게 왜곡되는지, 진정한 주민참여는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오래전 미국의 상황을 토대로 하여 쓰인 논문이지만 애석하게도 2020년 현재의 우리 상황도 Arnstein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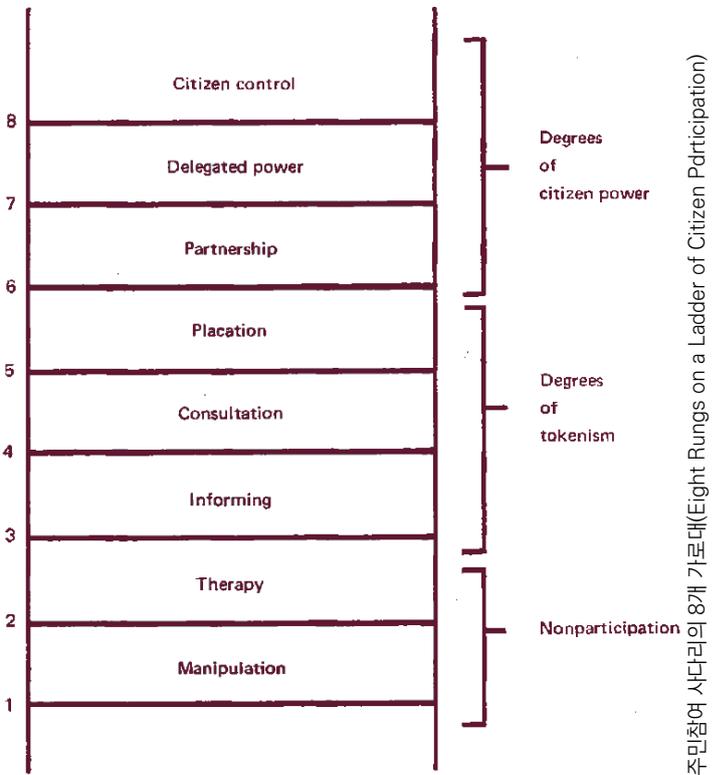
1 1963년에 미국의 3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린든 B. 존슨의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및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 정책의 프로그램 중 하나. 새로운 빈곤퇴치사업과 물리적 도시정비에 병행되는 사회프로그램이 도입되었으며, 다양한 빈곤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행정부서의 정책사업을 통합하려 하였다. 이 정책은 빈민계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흑인사회에서 젊은 활동가를 양성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 대규모 도시폭동이 빚어지면서 미국의 정세가 급격히 우경화되었고, 결국 물리적 정비 위주의 정책(bricks-and-mortar housing and building projects)으로 위축되었으며, 1974년 종결되었다. https://en.wikipedia.org/wiki/Model_Cities_Program

Arnstein의 문제의식

Arnstein은 주민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태(Nonparticipation), 명목적인 또는 형식적인 단계(Degrees of tokenism), 주민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지는 단계(Degrees of citizen power)를 구분하고, 이를 8개의 가로대로 구성된 사다리로 표현하였다. 주민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태는 'Manipulation'과 'Therapy'로 나뉜다. 각각 (기득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민 조종과 (기득권 입장에서의) 주민 교정(또는 계몽) 정도로 이해될 수 있다. 명목적인 또는 형식적인 단계는 'Informing' 'Consultation' 'Placation'으로 나뉜다. 각각 (일방적) 고지, (요식적) 의견수렴, 주민을 달래기 위한 (주민대표의 명목적 의사결정 참여) 정도로 이해될 수 있다. 주민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지는 단계는 'Partnership' 'Delegated power' 'Citizen control'로 나뉜다. 각각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에 따라 주민과 기득권자가) 정책사업에 대한 계획 및 의사결정 책임을 공유하기, (주민이 정책사업에 대한) 결정권한 위임받기, (정책사업에 대한) 주민자치 정도로 이해될 수 있다.

주민 조종(Manipulation)

1980년대까지 이어진 독재정치를 무너뜨리고 현재의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공공정책에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 공공계획의 수립 및 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 주민의견 수렴 등이 공식적인 절차로 도입되었다. 최근에는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정책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사례도 많다. 일각에서는 이 정도도 주민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하지만 Arnstein은 주민에게 아무런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럴듯한 이름의 위원회나 비슷한 무엇을 만든다고 하여도 주민참여일 수 없다고 단언한다.



주민 조종은 주민들을 실권이 없는 위원회나 자문단에 배치하고는 행정에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교육하거나 공공사업에 주민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의 술책이다. Arnstein은 빈곤층을 보호해야 할 시민자문위원회(Citizen Advisory Committees; CACs)가 지역사회의 인사 몇 명에게 위원 명찰을 달아주고는 도시재개발사업이 기득권에 유리한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길을 터주는 역할로 왜곡되는 것을 주민 조종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한다. 이런 위원회는 정책당국이 정책을 홍보하고 주민들이 정책을 지지하도록 달래거나 으름장을 놓는 합법적인 창구로 이용되었지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는 아니었다.

지역공동체사업단(Community Action Agencies; CAAs)¹이 만들어내는 마을협의회(neighborhood council), 마을자문단(neighborhood advisory group) 따위의 유명무실한 조직이 주민참여의 증거로 활용되는 것도 주민 조종의 사례로 언급된다. 이런 곳에서 벌어지는 일은 대체로 행정당국의 공무원이 "한 지붕 아래 보건소의 의료진, 복지국 직원, 고용지원센터의 전문가를 배치할 복합시설 제안서에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동의를 구하지만, 이전에 마을 여기저기에 있던 공무원 앞에 줄 섰던 것을 한곳에서 반복할 뿐인데 연간 2백만 달러가 쓰인다는 사실은 설명하지 않는 식이다. Arnstein은 이런 방식의 문제점을 다음처럼 묘사한다.

마을에 그런 시설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주민 누구에게도 묻지 않는다. 그 건물의 건축 계약을 시장의 매부에게 맡기는 것인지, 그 시설의 총 책임자가 도시재개발부서의 공무원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서야 마을협의회 위원들은 중요한

1 1960년대 미국의 대표적 사회복지 정책인 '빈곤과의 전쟁'의 일환으로 제정된 경제적 기회 보장법(Economic Opportunity Act)에 따른 지역공동체사업(Community Action Program; CAP)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 빈곤층의 자활을 촉진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며, 현재 미 전역에 1천 개 이상의 조직이 운영 중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Community_Action_Agencies

질문을 하지 못했으며, 법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문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에만 개방하는 새로운 시설은 오히려 불편만 키운다. 이제 마을 곳곳에 있었던 공무원들은 "그들"의 반짝이는 새로운 시설로 힘들게 찾아와 의뢰하지 않는 한 주민을 만나려 하지 않을 것이다. - Arnstein(1969), 위의 논문 218쪽.

주민 교정(Therapy)

Arnstein은 주민참여로 포장되어 있는 주민 교정은 기만적이고 불손한 것이라 단언한다. 왜냐하면 주민이 가난한 이유는 계층 때문이라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식의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Arnstein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든다.

1년 전 펜실베이니아에서 발생한 사건을 떠올려보자. 한 아버지가 심하게 아픈 아기를 데리고 지역 의료원의 응급실을 찾아갔다. 근무 중이던 젊은 의사가 집으로 데리고 가서 설탕물을 먹이라고 처방하였다. 아기는 폐렴과 탈수로 그날 오후 사망하였다. 분노한 아버지는 지역공동체사업단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지역공동체사업단은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원의 진료시스템을 점검하고 시정하도록 노력하는 대신에, 아기를 잃어 비통에 잠긴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이 고지하였다. “우리 지역공동체사업단은 부모를 위한 보육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측에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연락하겠습니다.” - Arnstein(1969), 위의 논문 218~219쪽.

공공임대주택단지에서 운영되는 자녀보호 프로그램(control-your-child)이나 마을정화 캠페인(cleanup campaign) 등도 주민참여를 가장한 주민 교정의 사례로 거론된다. 해당 모임에서는 공동체의 발전 등과 같은 (행정당국 입장에서 그럴듯한) 대의적 의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힘을 모은다는 전제하에 실제로 주민에게 중요한 좀 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관리 당국의 편의에 의한) 임의퇴거나 저소득층 주거지의 사회적 격리(segregation)와 같은 사회문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일 왜 깨진 유리창을 교체하는 데에 3개월이나 걸리는지 등과 같은 것은 다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일방적 고지(Informing)

어떤 사안에 대하여 충분히 알리는 것은 주민참여의 기본이다. 하지만 행정당국으로부터 주민에게 일방적으로만 정보가 전달되고 그것에 대한 주민의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될 수 없다면 주민참여일 리가 없다. Arnstein은 주민간담회 등이 피상적이거나 우회적인 답변만 하고, 주민의 질문은 억제하는 등의 행정당국의 태도에 따라 일방적 고지 수준에 머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로드 아일랜드 프로비던스에서 열린 최근 주민간담회에서 “어린이놀이터”를 주제로 다뤘다. 주민대표는 일주일 3~5번 회의에 참석하여 6개 놀이터의 위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흑인 대표들은 인구의 절반은 흑인인데 흑인 마을 쪽에는 놀이터가 2개뿐이라고 항의하였다. 시 공무원은 놀이터의 설치비용과 활용 가능한 예산 등과 같은 장황하고 전문적인 (알아듣기 힘들고 주눅 들게 하는) 답변을 늘어놓았다. 주민 대다수는 그런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기회보장국(Office of Economic Opportunity)²에서 파견한 주무관들은 주어진 예산에서 좀 더 공평하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대안을 충분히 제시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더 얘기해봐야 들어줄 리도 없고, 어려운 전문용어와 공무원의 위세 등에 눌린 주민들은 백인 마을에 놀이터 4개를 설치하는 계획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다. - Arnstein(1969), 위의 논문 219쪽

요식적 의견수렴(Consultation)

어떤 사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것은 주민참여의 출발점이다. 하지만 주민의 의견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실현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한 요식행위일 뿐 주민참여로 보기 어렵다. 요식적 의견수렴에서 주민들은 추상화된 통계적 객체에 불과하며, 설문응답자 수나 간담회 참여자 수로 주민참여의 성과를 평가하는 만행이 벌어진다. 의견수렴이 아니라 설문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펼쳐지고 주민들은 수많은 설문에 응답하다가 지쳐간다.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지도 않는데, 별 차이도 없는 문항을 들고 자꾸 찾아오니 끝내 분노를 느끼기도 한다. Arnstein은 “조사자가 3달러의 수당을 받고, 내가 세탁을 다 마무리하지 못한 것 외에, 그 설문을 통해서 바뀐 게 무엇인가?”라는 한 주부의 분노를 사례로 든다.

2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인 '빈곤과의 전쟁'을 담당하기 위해 1964년 설치된 행정기관.

또한, 선택 대안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진행되는 의견수렴도 요식행위일 뿐이다. Arnstein은 “행정당국이 설문 결과 주민들이 더 많은 놀이터를 원한다고 보고할지 모르지만, 만약 놀이터를 좀 줄이는 대신 무료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선순위에 많은 놀이터 설치를 두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요식적 의견수렴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의견수렴이 요식행위에 그치게 되면, 별 의미 없는 질의로 채워질 가능성도 있다. Arnstein은 “건강 클리닉에 찬성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주세요.” 따위의 질문을 대표적인 요식행위로 거론한다. 이는 “엄마가 좋은 사람은 손을 들어주세요.”라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사업에 찬성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런 식의 잘못된 의견수렴이 벌어진다 고 지적한다.

행정당국이나 전문가들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엉뚱한 결론을 내기도 한다. 제대로 된 의견수렴은 이런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다. Arnstein은 “텐버의 사례를 보면, 도시만들기 담당자들이 주민들이 인근 상점들의 바가지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고 이해하고 소비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었다. 하지만 그 상점들의 물건값이 비싼 것은 사실이었지만, 주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복지 및 급여 교환권(check)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유일한 장소였기에 주민들에게 중요한 장소였다. 의견수렴 결과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대신 인근에 주민금융지원센터를 만들기로 합의하였다.”고 소개한다.

명목적 의사결정 참여(Placation)

명목(tokenism)에 불과하더라도 의사결정에 주민대표가 참여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주민들이 영향력을 얻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주민대표가 소수에 불과하다면 명분 이상의 무언가를 얻기는 어려우므로 높은 수준의 주민참여를 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Arnstein은 이러한 사례로 기득권자가 다수인 지역공동체사업단의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경찰위원회, 주거위원회, 도시만들기 자문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에 소수의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것을 거론한다.

이러한 의사결정 참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기탄없이 제시될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권은 결국 정책당국 등 기득권자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Arnstein은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대표를 위한 자리가 마련된 것이 실제로 주민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주민들이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공공지원의 질, 주민들의 요구가 의사결정 과정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도”에 달려있다고 지적한다. 1960년대 미국의 도시만들기 사업 과정에 대한 여러 보고서에서 Arnstein이 인용한 다음과 같은 주민들의 불만을 살펴보면 ‘placation’ 수준에서 제대로 된 주민참여가 이뤄질 수 없음이 드러난다.

- 아무리 ‘참여’해 봐야 기득권자들이 정한 범위를 넘을 수 없었다.
- 행정당국이 과거의 행태를 반복하였다.
- 행정당국이 지역공동체에서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체와는 일하려 하지 않았다.
- 실제 빈곤층이 주민대표가 되지 못했다.
- 주민대표로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다.
- 주민들이 혁신을 요구하면 관료적인 반응이 돌아왔다.
- 행정당국이 숨은 의도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 정부의 공식적인 자료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 의사결정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없었다.

Arnstein은 1960년대 미국의 도시만들기 사업에서 대부분의 경우 “placation”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수십 년이 지난, 2020년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도 의사결정 과정에 소수의 주민대표가 참석하는 것이 주민참여의 최대 치로 여겨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계획 및 의사결정 책임 공유(Partnership)

Arnstein이 언급한 ‘partnership’은 정책위원회, 계획위원회 등의 정책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구조에서 주민이 기득권

자와 의사결정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과 기득권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하여 주민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기본규칙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파기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Arnstein은 “시청에 모자를 벗고 공손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모자를 쓴 채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지역사회활동가의 말을 인용한다.

Arnstein의 분석에 따르면 당시에 도시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던 도시 177곳 중 15곳에서 ‘partnership’ 수준에 이르렀으며, 그 동인은 행정당국의 과거와 같은 행태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있었다. 필라델피아의 사례를 보면 시 당국이 400쪽에 달하는 계획서를 주민들에게 던져주면서 며칠 내로 의견을 달라고 하는 행태에 분노한 주민들이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주민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보장을 하지 않으면 계획에 반대하겠다고 격렬히 항의하였다. 어쩔 수 없이, 시 당국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결국 광역협의회(Area Wide Council;AWC) 위원 정원 11석 중 5석을 주민 단체에 배분하였으며, 그 결과 행정당국의 시각에서 주민을 교정하려는 투로 쓰여졌던 장황한 보고서가 정책사업에 대한 강점, 약점 및 잠재력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둔 주민입장에서 유효적절한 보고서로 변경되었다. 계획의 최종 승인은 시의회의 권한이었지만, 광역협의회는 많은 유권자를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의회에 충분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지역토지은행(AWC Land Bank), 지역경제개발법인(AWC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900세대의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유지 시범사업 등의 혁신적인 계획을 제안할 수 있었다.

결정권한 주민위임(Delegated power)

‘partnership’처럼 주민과 기득권자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도시만들기 정책위원회나 지역공동체사업단의 의석 다수를 주민들에게 배분하여 주민이 정책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게 되면 현장의 요구와 상황을 반영한 사업계획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입안될 수 있다. 이전 단계에서는 기득권자들이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탄지를 거는 입장이었다면, 결정권한이 주민에게 위임되는 단계에서는 기득권자들이 해당 사업에 반대하려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Arnstein이 소개한 뉴헤이븐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주민 주도의 도시만들기 사업을 수행할 비영리법인이 설립되어 계획수립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 법인은 연방정부로부터 117,000달러의 운영비를 보조받았으며, 110,000달러 규모의 용역을 지역 업체에 발주하여 계획을 수립할 직원과 컨설턴트를 고용하도록 하였다. 도시만들기사업단(City Demonstaration Agency;CDA)¹의 운영위원회 의석 21개 중 11개를 이 법인의 관계자에게 배정하여 주도권을 보장하였다.

또 다른 사례로는 캘리포니아의 리치몬드 시처럼 시의회 등 기득권자와의 의견 조율이 어려울 경우 주민들에게 해당 계획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있으며 행정당국과의 기존 협의과정에서 불신이 쌓인 주민들에게 흥미로운 대안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지역공동체사업단의 프로그램이나 사업 중 일부를 지역 주민단체에 위탁하는 사례도 거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더 광범위한 권한을 주민에게 부여하는 형태가 주민참여의 최종 단계인 주민자치라 할 수 있다.

주민자치(Citizen control)

정책사업에 대한 주민자치는 특정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주민들에게 완전히 위임하는 것이다. 즉 주민들이 정책사업에 대한 계획, 집행, 관리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면서 스스로 발전하고 변화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Arnstein에 따르면 대체로 정부의 보조금을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법인(neighborhood corporation)을 두는 방식이 선호되었다고 한다.

Arnstein은 뉴욕시의 오션 힐-브라운스빌(Ocean Hill-Brownsville) 학교를 지역언론의 불안조성이나 정부의 보조금

1 1960년대 후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였던 기관.

제공에 대한 기득권자들의 각종 견제에 시달리면서도 성공적으로 주민자치를 이룬 사례로 들며 정책사업에 대한 주민 자치가 충분히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주민자치는 당연히 공공의 재정적 보조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Arnstein이 제시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클리블랜드의 호크 에어리어 개발법인(Hough Area Development Corporation)은 180만 달러의 연방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아 저소득층주거지 경제개발 프로그램, 상업시설 및 공공주택 복합건설 프로젝트, 지역건축업체에 대한 대출보증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였다.
2. 앨라배마주 셸마의 남서부 앨라배마 농민협동조합(the Southwest Alabama Farmers Cooperative Association;SWAFCA)은 약 백만 달러의 연방보조금으로 10개 지역(county)의 마케팅 협동조합을 지원하였다. 각종 방해에도 불구하고 첫해에만 1,150명의 농민이 협동조합에 가입했으며, 새로운 판로를 통해 52,000달러의 소득증대를 이루었다.
3. 알비나 지역법인(Albina Corporation) 및 알비나 지역투자기금(Albina Investment Trust)은 약 60만 달러의 자본금 중 30만 달러를 연방보조금으로 조성하였으며, 흑인 빈곤층이 자치 운영하는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4. 할렘 커먼웰스 지방의회(Harlem Commonwealth Council)는 약 80만 달러의 연방보조금을 활용하여 흑인 빈곤층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사회복지 및 경제개발 자치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사업에 대한 주민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이며, 따라서 관료제에 바탕으로 둔 행정체계의 대척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관료제의 여러 한계가 주민자치의 장점이 되며, 관료제의 여러 장점이 주민자치의 단점이 된다. 예를 들어 비전문가인 주민들이 주도하니 어느 정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면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Arnstein을 인용하자면, “주민자치를 제외한 그 어떤 시도도 주민이 겪는 실제 문제를 해소하는 것에 실패하였다!” 그러므로 주민자치가 가져올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 이 글은 Arnstein이 1969년에 미국 계획학회지에 게재한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입니다.